

제1033호 2025. 11. 28.

건설동향

BRIEF_{ing}

• AI 시대, 건설기업의 경영혁신 방향

- AI 급속 확산, 산업 전반·건설기업 경영까지 영향력 확대
- 건설업, AI 기반 생산혁신·경영관리 강화로 경쟁력 제고
- 건설기업, AI 시대 대응 위한 전략 로드맵 필수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11)

- 이슈 1 : 규제·처벌 강화만으로 산업재해 해소 불가능...폭넓은 제도 정비로 함께 고려해야
- 이슈 2 : 사후 규제영향평가 정식 제도화를 통한 행정규제 합리화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10.30.~'25.11.24)

AI 시대, 건설기업의 경영혁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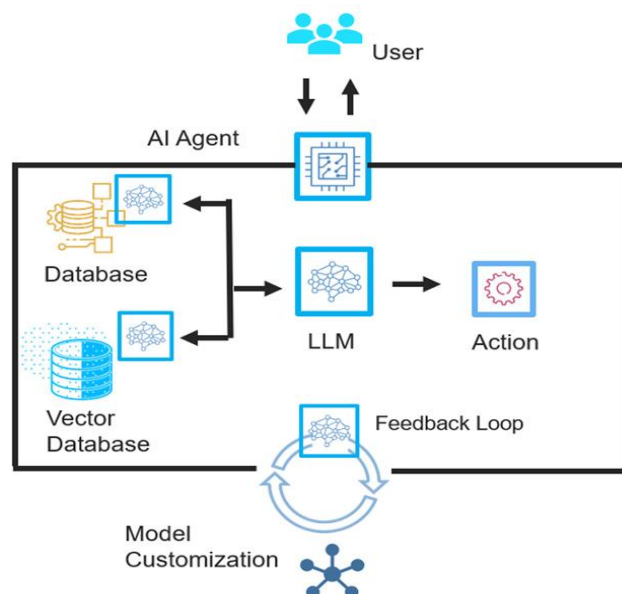
- 건설기업에 있어 AI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김영덕(선임연구위원 · ydkim@cerik.re.kr)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 산업 전 분야로 확산

- 인공지능(AI)은 단일의 특정 기술이 아닌 다양한 핵심 기술영역들이 광범위하게 포괄된 기술로서 조합 및 응용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에의 영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AI는 머신러닝(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처리, 컴퓨터 비전, 자율주행, 강화학습,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소 기술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
 - AI의 활용 범위는 지속 확장되고 있고, 향후 요소 기술들의 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더욱 응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서 산업과 사회에 있어 AI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 의료, 제조, 금융, 에너지,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적용 분야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음.

〈그림 1〉 Agentic AI의 개념



자료 : nvidia 홈페이지.

- 최근에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즉, 에이전트 형태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이 실험단계를 넘어 실제 활용 단계에 이르고 있음.
 - 특정 작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기업 내 자동화, 작업공정(workflow)관리, 고객 응대 등 고객관리 등에서 사람을 대신하거나 사람과 협업하는 에이전트형 AI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멀티모달(Multi Modal) AI와 대형 언어모델(LLM), 소형 언어모델(SLM)은 기존 생성형 AI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음.
 - 멀티모달 AI로 인하여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기술이 빠르게 성장 중임.
 - 또한, 거대 언어모델(LLM : Large Language Model)¹⁾만이 아니라, 더 작고 경량화된 언어모델(SLM: Small Language Model)²⁾들이 현장·엣지(Edge) 환경에서 활용 가능해지고 있음.
 - 이러한 AI 기술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업에서의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AI 기술이 산업과 기업에 있어 중요한 기술로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임.
 - Stanford HAI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민간 AI 투자액이 약 3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8.7 % 증가했고, 전 세계 벤처캐피탈(VC) 중 AI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올랐는데, 2024년에 AI 스타트업은 약 1,315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전년 대비 약 52% 증가했음.
 - 2025년 상반기에는 AI 관련 투자가 전체 VC 거래금액의 약 51%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2025~2029년 기간 동안 AI 투자가 연평균 약 2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주요국 국가 차원의 전략 로드맵 구축으로 대응

- 싱가포르의 국가전략으로 ‘National AI Strategy 2.0(2023년 수립)’을 통해 3대 생태계(활동 동인,

1) 거대언어모델(LLM)은 수십억~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대규모 언어 모델로, 자연스러운 대화와 복잡한 언어 이해·생성 기능을 제공함.

2) 소형언어모델(sLLM)은 파라미터 수가 1000억 개 이하로, 경량화되어 비용과 자원 소모가 적고, 산업별 특화나 모바일 환경에 적합함.

인재·사회, 인프라·환경) 기반으로 10대 이행 대상³⁾과 방향을 설정함.

- AI Singapore, GovTech(정부 디지털 혁신기관), 대학(NUS, NTU, SMU 등)이 상호 협력하는 집적형 구조로 국가 차원의 AI 접근을 주도하고 있으며, 물류, 핀테크,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경제, 사회 문제 해결에 AI를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은 ‘인공지능+ 액션플랜(2024년)’을 통해 전 산업에 AI를 도입하는 전략과 디지털화·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AI 산업 종합 표준화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24년)’을 통해 지방정부에 산업표준체계 구축 및 규범화를 추진 중임.
- 최근 생성형 AI 전문기업들이 지속 성장하면서 최첨단 LLM 개발에 집중하며 중국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칭화대 등)과의 공동 연구, 스타트업 협력이 AI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영국은 ‘AI Regulation White Paper(2023년)’을 제정하여 법적 규제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향후 최상의 규제 체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 EU 비회원국이나 유럽 고성능 컴퓨팅 공동사업(EuroHPC JU)(2021~2027년 예산 약 70억 EUR)에 멤버 스테이트로 참여 중임.
- Oxford, Cambridge, Alan Turing Institute 등 연구기관과 산업계가 긴밀한 연계를 통해 AI 연구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핀테크, 헬스케어,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등으로 AI 응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는 ‘France IA(2018년)’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에 투자하며, 공공 데이터 개방, 윤리·데이터 보안 지침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세계 최초의 AI 규제와 법적 프레임워크인 ‘EU AI Act’ 등 유럽 규범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AI 규범을 수립하였음.
- 파리 AI 클러스터, 연구기관(INRIA, ENS 등)과의 스타트업 및 혁신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한 상황임.

● 독일은 ‘AI 국가 전략(2018년 수립, 2020년 갱신)’과 ‘AI 액션 플랜(2023년)’으로 각 50억 EUR, 16억 EUR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음.

-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제조 분야 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산업-연구 연계를 통한 첨단 솔루션과 응용 기술 현장 도입을 선도하고 있음.

3) 10대 이행 대상은 산업, 정부, 학계, 인재, 역량, Place-making, 자동화, 데이터, 환경, 리더십임.

- 또한, 유럽 내 공동의 기술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유럽 차원의 디지털 주권 확보와 기술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등 세계적 연구소가 기초·응용 AI 개발을 선도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

●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르게 AI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 인도는 ‘AI for ALL(2018년)’ 전략을 통해 AI의 포용적인 확산,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India AI Mission(2024년)’을 통해 2024~2029년간 1,030억 INR(약 1.7조 원) 투자하여 인도 내 AI 생태계 구축 및 강화, 역량 개발 등을 도모하고 있음. 특히, AI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AI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가 AI 포털 운영 중임.
- 인도의 대형 AI 기업인 Tata Elxsi, TCS, Infosys, Wipro, HCL Tech 등이 AI 서비스·솔루션과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Fractal Analytics(빅데이터·헬스케어 분석), InMobi(광고), GreyOrange(로보틱스) 등 다양한 AI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전 세계 AI의 민간부문 투자에 있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에서는 과도한 규제보다 민간 주도의 자율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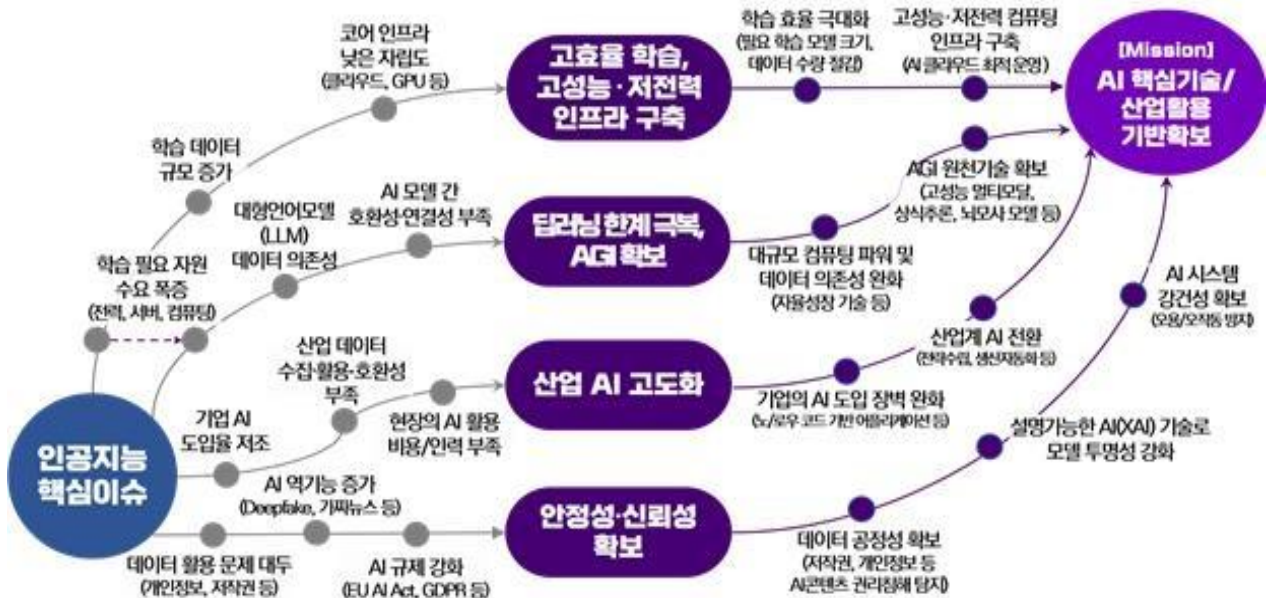
- AI 안전·보안 표준 개발,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AI 기술 혁신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을 도모하고 있음.
- 벤처 투자와 명문 대학(Stanford, MIT 등)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민관 협력하에 공공분야 적용도 확대 중임.
- 대형언어모델(LLM), 생성형 AI, 기초연구, 기업용 AI 플랫폼, 하드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보급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는 AI 인프라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AI 개발 촉진과 동시에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AI의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책임 원칙이 포함된 포괄적 AI 법안인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통과됨.

- 최근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AI 활용 확대와 중소기업 AI 지원 정책 등임. 집중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있어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4~2023년간 공공부문에서 AI 도입 계약 건수가 약 5,891건이며,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약 60.6%가 AI를 도입한 상태임.
- 최근 발표된 산업 전망에 따르면 국내의 AI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43조원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약 14% 성장해 2027년엔 약 4.4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제조·금융·의료·교육·모빌리티 등 전 산업 분야로 AI 기술 적용 범위가 확산되는 것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됨.
- 우리나라의 AI 기술 발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으로 자연어처리나 언어모델 연

구 등에서 ‘추론(reasoning)’ 기능 강화가 기술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로봇, 온디바이스 AI, 멀티에이전트 AI 등 기술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음.

〈그림 2〉 정부의 AI 추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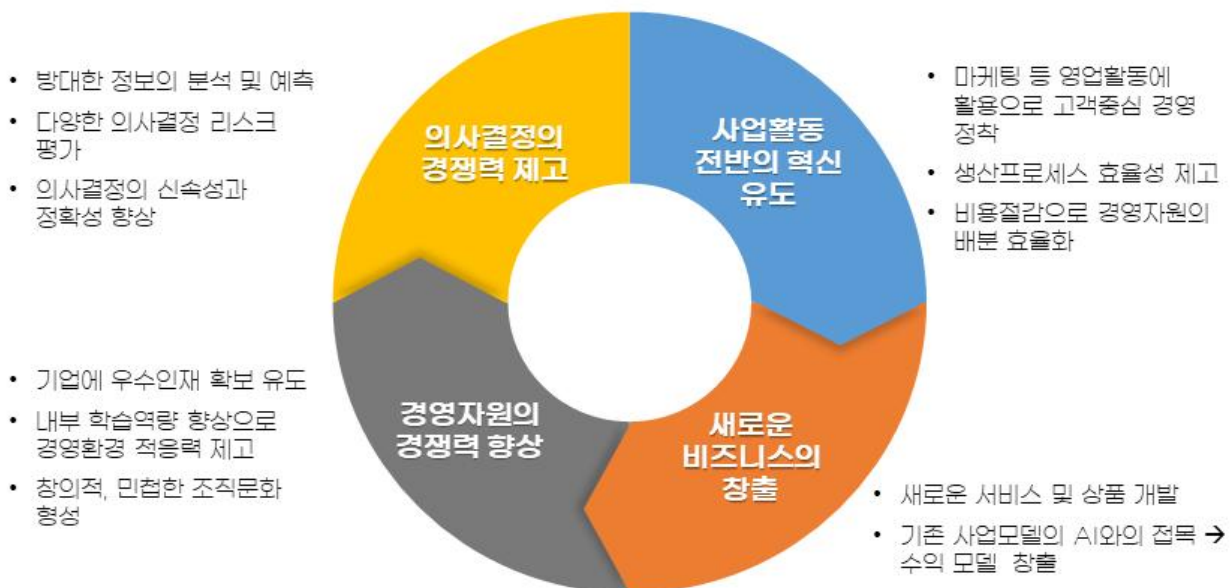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의 경영 전반 영향력 확대

- AI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기업은 이전에 겪어왔던 변화의 물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놓이게 되었음.
 - AI의 확산 즉,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 혹은 자동화의 진전은 산업 더 나아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AI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컴퓨터 기술이었으나, 지속 발전함에 따라 의사결정, 업무 혁신 그리고 고객 관리에 이르기까지 활용 영역이 늘어났음.
 - 특히,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생성형 AI가 개발되면서 기업들도 AI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업무의 혁신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이러한 AI 기술의 활용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성장해왔음.
- AI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지속적 발전은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AI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첫째, 경영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임. 기존 주요 의사결정자의 경험과 직감, 제한된 정보하에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이 AI의 활용으로 인하여 방대한 정보의 분석 및 예측,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됨. 또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둘째, 기업의 영업, 생산 등 사업활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음. 영업활동에 있어선 기업의 핵심 고객들에 대한 다양한 행동 패턴, 선호 성향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중심의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생산에 있어선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접근을 통해 전체적인 생산 프로세스상의 비효율적인 요소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고, AI 기술을 통하여 단순, 반복 작업을 대체함에 따라서 비용 절감은 물론, 인력 등 경영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셋째, AI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가능하게 함. AI는 기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AI 기술이 수반되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기존 사업모델에 있어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기업에 있어 수익의 다각화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넷째, 기업 내부의 인력, 재무 등 경영자원의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돕는다는 것임. AI는 기업경영의 모든 측면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도와주고, AI의 효과적 활용은 기업 내부의 학습역량을 끌어 올리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의 적응력을 높여주게 됨. AI를 통한 데이터 중심적인 조직문화의 형성은 조직 내부에 창의적이고, 민첩한 경영 활동을 지원함.

〈그림 3〉 AI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건설기업 경영 전반의 활용도 확대 전망

- AI가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건설기업들도 AI 확산의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은 내외부적인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업 구조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대응 속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임.
 -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건설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건설생산에 참여하는 인력의 고령화 심화와 역량 저하에 따라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건설시장 측면에서는 국내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외부적으로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인구 감소 및 생산성 저하, 경제성장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의 활용역량이 중요한 경쟁력 요인으로 성장하고 있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에 새로운 요구와 기대가 성장 중임.
- 건설산업의 내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건설기업은 새로운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특히, 건설기업의 생산, 영업, 기술 및 재무, 인력 등 경영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AI의 성장은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AI 기술은 경영 전반의 변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건설기업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은 대내외의 경영환경변화에의 적응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AI를 활용한 건설생산 전반의 혁신

- AI 기술의 발전은 건설생산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성장 가능함.
 - 건설사업의 생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생산에 참여하는 인력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역량 저하라는 점에서 건설생산과정에서 AI와 로봇틱스 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자동화의 확산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공정 및 품질관리상, 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률의 예측, 공정의 최적화, 재고관리에 활용하여 생산성,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딥러닝,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시험 및 검사, 품질, 오시공·재

시공의 방지 등을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과 낭비 요소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4〉 AI 기반 콘크리트 품질관리 예측시스템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근 더욱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선 AI의 영상 분석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 위험 감지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당 공종이나 유사 프로젝트에서의 과거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유형과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AI는 건설현장의 과거 사후 점검과 경험에 의존한 활동들을 개선하도록 도움으로써 품질과 안전을 확보 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건설현장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습도 등 기후와 날씨 등 건설현장의 환경 관련 정보, 원자재의 품질, 작업자의 숙련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을 기존 사람의 분석 능력에 의존하던 것에서 다차원적 데이터의 종합적 분석에 AI 기술을 활용하면, 품질, 안전 등 건설생산관리의 혁신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AI 기술의 활용은 생산관리의 행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생성형 AI는 건설 생산과정에서 공정계획의 수립 및 수요 예측, 자재 소요계획 및 자재 관리의 최적화, 장비 등 설비의 관리, 품질 시험 및 검사, 작업 지시서 자동 생성 및 공정 최적화, AI에 기반한 기술문서와 매뉴얼 작성, 생산성과 직결된 핵심 관리 지표들의 분석 및 자동 리포팅,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 개선 및 디지털 트윈 등의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AI를 활용한 건설기업 사업 경쟁력 향상

- 민간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설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에 있어 AI 기술의 활용은 필수적임.
 - 건설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사업 소요기간, 사업금액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프로세스의 경쟁력은 건설기업 경영의 핵심임. AI 활용은 사업 아이디어의 구체화, 시장조사,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전 과정에서 창의력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임.
- 기획단계에서는 수요자 데이터와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품을 제시함.
 - AI는 과거 성공적인 사업의 패턴을 학습하고, 현재 시장 상황과 결합해 최적의 사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음. AI가 방대한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혁신적인 기술 조합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품의 기대 성능과 매력도를 미리 검증할 수도 있음.
-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성, 경쟁력, 리스크 등 핵심 요소들에 대하여 사전적인 분석이 가능함.
 -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동향, 새로운 기술 수요 등을 분석하고, 웹 크롤링⁴⁾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쟁사의 전략 및 투자 동향 분석, 고객의 반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요 전망의 정밀한 예측도 가능함.
- 건설기업의 마케팅 역량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AI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은 매우 중요함.
 - 건설기업의 경우, 고객 데이터 분석 업무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AI는 건설상품별 차별화된 고객 그룹 분류에 있어 유용한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고, 고객의 과거 구매 이력, 구매 행동 패턴, 고객 서비스 상담 내용 등을 AI에 입력해 상세한 고객 페르소나⁵⁾를 개발하도록 도움.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서도 AI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능함.
 - AI의 다양한 기술들을 기존 사업영역의 확장이나 완전히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에 활용할 수 있음. 특히, 건설기업이 제공하는 주택 등 건설시설물 및 건설서비스에 AI 기술이 접목될 경우, 건설시설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4) 자동화된 프로그램(크롤러)이 웹 페이지를 탐색해 데이터를 수집·분류·저장하는 과정을 말함.

5) 제품·서비스를 사용할 이상적인 고객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로,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짐.

- AI 기술 융합은 기존 건설상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더욱 높여줄 수 있으며, AI를 활용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생태계 구축은 건설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확장과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AI 기술 기반의 경영관리 역량 강화

- 최근 건설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인력, 재무 등 경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건설기업의 경영관리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업의 경영현안이 되고 있는바, AI는 중요한 도구로 성장이 전망됨.
 - **(경영기획 분야)** 건설기업의 경영기획 수립에 있어 AI의 활용은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생성형 AI를 통하여 기업 경영전략 수립 및 시나리오 플래닝, 국내외 시장 및 경쟁 분석, 단기 및 중장기 재무계획 및 예측, 핵심 성과 지표 설정 및 성과 분석 등에 활용이 가능함.
 - 특히, 건설기업은 보다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과 특정 분야에 정밀한 시장 분석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AI 기술의 활용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적자원관리 분야)** 인적자원관리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질 향상에 있어 핵심영역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인적자원 관리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됨.
 - 건설기업의 경우, 역량에 기반한 인력의 배치 및 경력개발이 건설프로젝트 더 나아가 조직목표의 성공적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바, 기업 내부의 인적자원의 역량, 경험, 성향, 성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프로젝트, 부서와 역할을 추천해주고, 개인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인력 구성을 제안해줄 수 있음.
 - 또한,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할 때, AI는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이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식별해 주고, 다양한 직종과 사업영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도움.
 - **(재무관리 분야)** AI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과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요소의 정보 탐지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기업의 다양한 재무정보들의 분석과 재무적 의사결정 지원에 있어 AI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자금 소요가 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와 전체적인 기업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분석, 자금 조달 기능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AI 기술의 건설기업 재무관리에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음.
 - 건설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무기능인 자금 조달에 있어 자금 조달의 시기 및 방법의 최적화를 통해 건설기업의 성과 향상을 도우며, 과거 현금 흐름 패턴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정확한 현금 흐름을 예측하도록 돕고, 자금 운용에 있어선 다양한 투자 옵션을 분석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해줄 수 있음.

- **(조직문화 분야)** 건설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조직의 변화관리 경영과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확립,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창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AI의 확산은 조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도록 함. 특히,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
- 기업 내부에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내 역량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킴. 또한, 핵심 리더십 역량의 변화를 유도해 직원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과 업무 자동화로 업무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인간적인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킴.

대형건설기업을 중심으로 AI 기술 확산 중

- 국내 건설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스마트 건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AI를 도입하기 시작함. 주로 대형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AI를 사업의 기획, 시공단계 그리고, 유지관리 더 나아가 경영관리에 활용하기 시작하였음.
-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관리에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I 기반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건설현장에 도입함.
 - AI에 기반한 CCTV 영상분석 기술을 통하여 위험 행동 실시간 감지가 가능한 AI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드론·LiDAR 영상 AI 분석으로 공정관리의 자동화를 지속 개발함. 또한, 입찰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헬스케어 특화 AI 챗봇”을 최초로 적용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체 브랜드 아파트에 AI 주차장을 최초로 적용하였고, AI 시뮬레이션 기술 기반으로 시공계획 작성을 자동화하고 있음.
 - 현재 ChatGPT 기반의 내부 문서 작성 도우미도 시험 운영 중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1월 11일, “AI 네이티브 건설사”를 선언하고, 업무의 모든 프로세스와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AI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함.
 - 최근 개발한 AI-ITB Reviewer 등 ‘AI 에이전트’를 2026년부터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등 향후 3년간 단계별 AI 전환을 추진할 예정임.

- 지난 8월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AI 구조도면 검토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GS건설’은 국내 건설기업 최초로 OpenAI사의 기업용 AI 솔루션 “ChatGPT Enterprise”를 도입함. 향후 기술 및 계약 검토부터, 설계 도면 분석이나 견적, 예산 검토 같은 고난도 과제와 안전, 장비에 대한 조기 탐지 등에 널리 사용할 예정임.
 - AI를 활용한 하자 예방 플랫폼은 하자의 재발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며, AI 기반 번역 프로그램 ‘자이보이스(Xi Voice)’를 개발해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롯데건설’도 설계, 시공단계부터 근로자 안전관리까지 전 분야에 AI 활용을 추진 중임.
 -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 행동기반 AI 안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여 김포-파주 구간 고속국도에 최초로 적용하였음.
 - 또한, 본사에 AI 시스템 연계 통합 영상관제센터를 개관하고, 전 현장의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이 가능토록 함.
- ‘DL이앤씨’는 타 건설기업보다 한발 앞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차장의 혁신을 시도하여 2021년에 이미 AI 기반 지하주차장 자동설계 기술을 특허 출원함.
 - AI 기반 지하주차장 자동설계 기술은 아파트 단지 조성에 활용 중임. AI 영상분석 안전관리 플랫폼인 ‘스마트세이프티’ 운영하고 있으며, LLM 기반 설계 검토 자동화 시스템을 추진 중임.
- ‘대우건설’은 2024년 11월, AI 기반의 계약문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방대한 입찰안내서와 해외 프로젝트 계약문서를 AI를 활용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국내 최초로 AI 기반 조경 설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정부 아파트에 최초로 적용하였음.
-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은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주로 안전관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개발영역에 있어 공동주택의 서비스 확장, 시공단계의 로봇 등에 치중되어 있음.
 - 실질적으로 건설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AI 기술의 활용 사례는 아직 적은 상황임. 아울러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혁신과 직결되는 품질, 공정관리 등 건설생산 단계에서의 AI 기술의 활용도 및 경영관리 및 지원기능에 있어선 AI 기술 활용은 여전히 미흡함.
 - 특히, 중소건설기업의 AI 기술 활용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는 중소건설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AI 기술이 부족하고, AI 기술개발 혹은 기술협력 관련한 활동들에 있어 중소건설기업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 현재 AI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필연적임. 향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평균 수십 퍼센트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큰 반면, AI 도입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명확한 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함.

건설기업의 AI 확산을 위한 경영혁신 방향 : 로드맵 구축으로 전략적 접근 필요

- AI의 응용기술의 범위가 넓고, 각 건설기업이 주력하는 사업의 영역이 다양해 차별화된 AI 전략이 필요함.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AI 도입을 위해선 명확한 목표하에 충분한 준비 기간과 설계, 실행 과정이 있어야 하며, AI 확산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즉, 준비단계-기획·설계단계-실행단계-확산단계의 구축이 필요함.
- 준비단계에서는 AI 도입을 위한 자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정이 필요함.
 - 현재 기업의 데이터 품질, IT 인프라, 인력 역량, 조직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AI 도입을 위한 기술적, 조직적 준비를 해야 함.
 - 기술적으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개발 환경 구축을 해야 하며, 조직적으로 전담 조직 및 인력의 양성,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기획·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AI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기획, 설계해야 함.
 - 기업의 사업목표와 AI 목표 간 연계 하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자계획 수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또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선정과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와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실행을 위해 단, 장기 목표를 타임라인으로 설정해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실행단계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행과 확산을 통해 본격적으로 AI 프로젝트의 실행을 추진하는 단계임.
 -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모델 개발 및 훈련, 테스트 및 검증과정을 거치고, AI 실행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 교육 및 훈련,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수집 및 반영, 저항 관리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확산단계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사 확산 및 지속적 개선 등 확산 활동을 포함함.
 - 성공한 AI 프로젝트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지속 개선하는 단계로서 성공사례를 표준화하고, 플랫폼화하

며, 전문 AI 조직을 통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 성능 모니터링, 데이터 업데이트, 기술 진화에의 대응 등이 필요함.

〈그림 5〉 AI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전략 로드맵



🔑 건설기업의 AI 확산을 위한 경영혁신 방향 : 건설기업 내부의 AI 확산 환경 조성

- AI의 건설기업 내 성공적인 도입은 무엇보다 현재의 건설기업의 내부 환경을 AI 기술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첫째, AI 리터러시(Literacy)를 강화해야 함. 기업의 모든 조직구성원이 AI의 기본 개념, 작동 원리,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기 위해 정기적인 AI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특히, 이 과정에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AI를 활용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함.
 - 둘째,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구축으로. AI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경영도구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업무방식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함.
 - AI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하려는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의사결정 문화를 구축해야 함.

- 셋째, 무엇보다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AI는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데이터를 확보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건설기업은 BIM, 드론, IoT 센서, CCTV, ERP, 원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장별 표준 포맷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정제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

건설기업의 AI 확산을 위한 경영혁신 방향 : AI 시대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

- AI 시대의 기업 경영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명확한 예측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새로운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AI와 결합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AI 시대에 맞춘 건설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은 과거 경영진의 경험과 직감에 의존했던 전략 수립과정에서 AI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임.
 - 기업의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AI가 예측을 통해 인력, 재고관리, 재무 등 업무 전반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AI 시대에 의사결정체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전략 요소로 AI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보조, 대체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재무, 마케팅, 인사, 생산 전 부분에서 예측기반의 경영을 확산하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사업전략부문에서는 AI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해야 하고, AI 기반의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기존사업의 새로운 서비스 범위의 확장 및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관행의 확립도 중요한 사업전략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조직 전략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직관리 전략과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바, AI와 함께 일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인력관리에 있어선 AI와 관련된 스킬과 역량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AI가 기업 내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AI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함.
 -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개별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AI 플랫폼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다양한 AI 생태계 참여를 모색하는 한편, 스타트업·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임.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11)

전영준 연구센터장(yjjun@cerik.re.kr)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최근 약 한 달(25.10.30.~11.24) 동안 국회에서는 700건의 법률안이 신규 발의되었으며, 이 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 제·개정안은 59건에 달함.

이달에도 입법부는 59건의 건설 관련 신규 입법안 중 29건이 건설안전과 관련된 입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8건에 달해 이달 발의된 건설 관련 전체 입법안 중 약 30%에 해당하는 등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규제 및 처벌 강화 중심의 입법이 계속하여 발의됨.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합리적 법률 제·개정과 시대 변화에 발맞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산업계의 계속된 관심이 필요함.

이슈 1 규제·처벌 강화만으로 산업재해 해소 불가능...폭넓은 제도 정비를 함께 고려해야

- 지난 7월 말 인터넷을 통해 처음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주제 심층 토의가 이루어진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는 계속하여 안전 규제와 관련한 제재·처벌 강화 대책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음.
- '25.7.29. 국무회의 이후 입법·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하더라도 41건에 달해 전체 건설 관련 입법 제·개정 발의 건수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함(2위 9건).
- 해당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대부분은 산업재해 예방·저감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규제 및 제재·처분 강화 사항이며, 그 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내용임.
- 또한, 지난 9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¹⁾ 발표에 따른 후속 입법에 관한 사항(청부입법)도 지난달 이후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는 상황임.
- 이달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과 관련한 대표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및 협업 강화' 관련 사항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 재해 추가',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관련한 입법 사항임.
- 우선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및 협업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 관계부처 합동(2025.9.15),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

장 감독과 사후조치 권한(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해 법률 개정안 5건이 발의됨.

-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 제정 법률안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지자체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임.
- 이와 연계하여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는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8·9급 지방공무원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발의함.
- 또한, 상기 법률안 입법 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 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931호)까지 촘촘히 입법 발의됨.
- 이와 유사하게 이해식 의원 또한 정부 계획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미제정 시에도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6호)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4호)의 개정을 통해 동일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입법안을 발의함.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와 관련하여서도 이달 복수의 법률이 발의됨. 우선하여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17호)에서는 현행 폭염·한파의 경우 법령상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폭염·한파 포함)일 경우 공기연장 사유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이와 유사하게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22호) 또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4호)의 경우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직접적으로 폭염·한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김운 의원이 정부안인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부과보다 강화된 제재안을 발의함.
- 구체적으로 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45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더

불어 반복되는 경우 1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계속된 산업재해 예방·저감 목적 규제 및 제재·처벌 강화 입법 시 목적에 따른 합리적 개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개정 필요 영역에 대한 사전 도출이 보다 면밀히 마련되기를 희망함.
- 현행 산업재해 예방·저감을 위한 규제 및 제재·처벌 강화 입법안은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건설공사 산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단편적 접근을 반복하고 있음.
- 허나, 건설공사 및 산업에서의 직·간접적 산업재해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외에도 「하도급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규제 및 처벌 설계가 필요함.
- 일례로 이달 복수의 개정안이 입법발의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와 관련하여서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의 개정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미 공공공사의 공사계약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과 민간공사 표준공사계약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불가항력의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과 한파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의 명시화는 발주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점과 더불어 발주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폭염과 한파 기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사전 비작업일수 포함 계상 여부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금액 조정의 구체적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추가적인 비용 변경(증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고려되지 않기에 해당 내용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그러함.
-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법부의 규제 및 제재·처벌 강화 시에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유사 제도의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행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평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규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타 법령 개정 필요 사항 발굴 및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표〉 규제 신설·강화 시 불필요한 피규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1. (현행과 같음)

11의2.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의 피해 경감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타 법령 개정 필요사항
〈신설〉

이슈 2 사후 규제영향평가 정식 제도화를 통한 행정규제 합리화

- 지난 '22년 정부는 사후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발표하고, '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한계와 보완 필요성이 존재하나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고 실제 규제 개혁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권고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정책 도구로 자리매김²⁾하고 있어 제도 운용의 필요성은 증빙되었다고 판단됨.
- 시범사업 3년이 지난 시점 최근 국회에서는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는 입법 개정안이 발의됨.
 -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18호)에서는 현행법을 통해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근거로 사후 규제영향평가 정식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특히, 대표적 규제산업인 건설산업의 경우 산업의 진흥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 저감을 위해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발 빠른 입법 완성을 희망함.
 - 현재 건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사업 유형과 사업 위치 등에 의해 일부 상이하나 29개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고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제 조문은 5,594개에 달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규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
 - 이뿐만이 아니라 22대 국회만 하더라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규제 신설과 강화의 내용을 담은 입법이 월 평균 20건에 이르고 있어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중복 규제와 처벌 강화 내용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상황임.
 - 이 외 기존 건설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규제 내용 상당수는 규제일몰제에 따라 재검토 대상임에도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규제 신설 시 규제당국의 필요에 의해 축소하여 사전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도 많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중층적 산업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규제 저감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 규제영향분석 내실화와 함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2)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 규제영향평가포럼 :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3년, 회고와 전망, 한국행정연구원, 2025.5.29.

건설산업 관련^{직·간접적}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10.30.~'25.11.24)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신설·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의안번호: 제13809호(안도걸 의원 등 15인)] ('25.10.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자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 유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13810호(이건태 의원 등 10인)] ('25.10.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지하시설물 정기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사후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실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46.2%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는 실정 - (제안방향)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 안전상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안 제34조제1항 등)
「건설기술 진흥법」	• [의안번호: 제13812호(이건태 의원 등 11인)] ('25.10.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 요청하여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실질적인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제안방향)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 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 확보(안 제54조의2 신설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의안번호: 제13816호(조지연 의원 등 12인)] ('25.10.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 - (제안방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안 제96조제2항)

법률명	주요 내용
「건축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3838호(천준호 의원 등 10인)] ('25.10.3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49만 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미등록 설계·시공자 등도 벌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공무원 등의 검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예방의 실효성 확보 유도(안 제22조의2 및 제80조의3 신설, 제79조, 제80조, 제87조의3,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3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의안번호: 제13849호(조인철 의원 등 10인)] ('25.10.3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은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자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AI 3개 강국(G3)' 도약은 국가적 과제인 상황으로 시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지 선정·전력 공급 등 주요 행정 절차에서 병목현상이 반복되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특히 향후 3년은 AI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평가되며, 이 시기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될 경우 'AI 3대 강국' 실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 - (제안방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859호(서왕진 의원 등 13인)] ('25.11.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작업, 수은 등의 가공 작업 등 특정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조선소·건설업 등 일부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상사·고위험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 밀폐공간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 단독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 - (제안방향)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사·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9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제63조제2항 신설 등)
「공공주택특별법」	• [의안번호: 제13874호(이연희 의원 등 12인)] ('25.11.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급격한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 ▪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통합심의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여 함께 심의하는 사업 절차 개선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추가 (안 제33조) ▪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친 것으로 판단(안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3893호(박홍배 의원 등 24인)] ('25.1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 ▪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 - (제안방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3895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의 상시 논의 기구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활성화를 통한 산재 사망 사고 예방 유도(안 제158조의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896호(박홍배 의원 등 20인)] ('25.1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원도급자에 의해 지연되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 ▪ 이런 문제는 하도급자(중소 건설업체)와 소속 노동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공사 품질 저하와 산업 전방의 불신을 야기 ▪ 특히 정부가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은 노무비 구분관리 등 일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전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공공공사에 대해 원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일정비율 이상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을 실질적으로 보장(안 제34조제9항)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3902호(김주영 의원 등 11인)] ('25.1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①)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나,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

법률명	주요 내용
	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 신설) - (제안이유·방향②)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56조제1항)와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안 제49조제1항) - (제안이유·방향③) 현재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 강화(안 제56조제2항·제5항 및 제162조의2 신설, 제162조 및 제170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3917호(김주영 의원 등 11인)] (‘25.1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태풍·홍수 등 일부 악천후를 열거하고 있으나 폭염·한파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발생 ▪ 또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폭염·혹한 시 작업중지와 휴식 의무가 강화 - 이렇듯 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폭염·한파는 이미 태풍·홍수와 동등한 수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법령상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발주자와 도급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안전조치가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키고, 모호한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정비함으로써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안 제70조제1항제1호)
「행정규제기본법」	• [의안번호: 제13918호(정태호 의원 등 10인)] (‘25.1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제안이유②)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 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 ▪ 특히 AI, 빅데이터, IoT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정비가 시급 - (제안이유③)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한계가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 도모 ▪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의무화(안 제7조의2 신설 등)

법률명	주요 내용
	■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 정비를 위해 위원회가 정비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의5 신설 등) ■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 규제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사법경찰 직무법」	• [의안번호: 제13929호(박홍배 의원 등 13인)] ('25.1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 - (제안방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제1항)하고, 8·9급 지방공무원에 대해 지방감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의2제2항) ※ 본 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의 의결을 전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제13930호(김주영 의원 등 10인)] ('25.11.5. 법률제정 발의) -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이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권한·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 -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 - (제안방향)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해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법률 제정안을 마련 - 이와 함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둔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또한,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임 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통제 권한 명시 ■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근로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정의(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중앙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신고사건의 제가·조사·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

법률명	주요 내용
	구체화(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감독 등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징계요구 등 위임 사무 관리·감독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규정(안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 근로감독관 교육·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등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 비밀유지 의무 위반, 거짓 진술, 출석 불응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본 법률안은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 및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의 의결을 전제
「근로기준법」	[의안번호: 제13931호(김태선 의원 등 10인)] ('25.11.5.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권한·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 (제안방향)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현행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혼선 방지(안 제101조·제104조 개정 및 제102조·제102조의2·제103조·제105조 삭제 등) ※ 본 법률안은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의 의결을 전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의안번호: 제13941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11.6.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에 개선 추진 (제안방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 보장(안 제52조제4항·제5항 신설 등)
「공공주택특별법」	[의안번호: 제13998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5.11.7.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자·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 (제안방향) 관계기관 간의 이견·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 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4017호(이성권 의원 등 12인)] ('25.11.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 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 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도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4033호(정혜경 의원 등 10인)] ('25.11.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 내포 - (제안방향)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안 제10조의2 신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14039호(김형동 의원 등 10인)] ('25.11.10. 전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현재 충남·전남·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 ▪ 도청이전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수준으로 도청이전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 ▪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 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 ▪ 특히 충남·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최근 도청이전신도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향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 - (제안방향)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 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 제명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 ▪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대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및 이전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안 제36조)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특례시 우선 지정, 지역기업의 우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건축법」	• [의안번호: 제14041호(황희 의원 등 10인)]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다락은 제외하도록 하되, 다락의 층고 기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미터) 이하를 두어 제외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명	주요 내용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다락의 현행 층고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기에 개선 - (제안방향)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규정(안 제84조제2항 신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4042호(김형동 의원 등 10인)]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안(「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 - (제안방향) 법률안 취지에 맞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 본 법률안은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의 의결을 전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14043호(김형동 의원 등 10인)]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중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2,591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 불가 상황 - (제안방향)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6조제3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4045호(김윤 의원 등 10인)]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반복 ▪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 빈번 - (제안방향)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안 제161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4050호(정혜경 의원 등 11인)]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법률명	주요 내용
	있어 하도급 구조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안 제70조) -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도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안 제72조, 제175조)
「주차장법」	• [의안번호: 제14056호(국토교통위원장 대안)]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①)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 - (제안이유·방향②)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안 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4067호(황희 의원 등 10인)]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하며,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 중이나,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가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 - (제안이유②) 2023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어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주택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산업단지기본계획에서는 별도로 입주 대상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제안이유③)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시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제안방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 개선·정비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 촉진 유도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제3항 후단 신설)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33조제7항제2호 후단 신설) ▪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제3호·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4070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 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작업중지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 - (제안방향)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5조)

법률명	주요 내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4074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2020년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기숙사에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취약한 주거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 ▪ 현행법 제22조의2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의 관리·운영 및 보전에 관한 기준일 뿐,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및 주거 기능 확보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부재하여 근본적 주거 환경 개선 한계 노출 - (제안방향①)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을 원천 금지하며, 또한 작업안전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 - (제안방향②)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의안번호: 제14085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히트펌프(Heat Pump)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의 열을 흡수·이동시켜 난방·냉방·급탕 등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로, 보일러 등 기존 연소방식 대비해 3~5배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장점이 있어 건물·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평가 ▪ 이에 EU, 일본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하고, 설치보조금·세제혜택 등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 -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 - (제안방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지원 대상인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안 제36조의4 신설)
「석면안전 관리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4087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11.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작업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 수립 단계의 전문적 심의 체계와 시공 단계의 엄정한 감리가 함께 작동 필요 - 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하고, 감리업무 역시 석면 잔재물 여부 확인 및 행정기관 보고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족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 제기 - (제안방향)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석면의 설치·관리·해체·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 보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조의4제6항 신설)
「산업안전 보건법」	• [의안번호: 제14094호(이용우 의원 등 11인)] (‘25.11.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 혼란 발생 - (제안방향)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 해소(안 제70조제1항제1호)

법률명	주요 내용
「상생협력법」	• [의안번호: 제14095호(송재봉 의원 등 19인)] (‘25.11.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법」 제25조와 같이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인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중소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28조제3항)
「장애인등 편의법」	• [의안번호: 제14105호(최보윤 의원 등 11인)] (‘25.11.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부재하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 - (제안방향)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9조의4 신설)
「상생협력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4116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25.11.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①)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제 안착 도모 ▪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안 제2조제12의2 및 제13호 등) ▪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안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14호) - (제안이유·방향②)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 추가 신설(안 제2조제10의2 등) - (제안이유·방향③)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 등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제10의2 등) - (제안이유·방향④)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건수 증가에 대응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추가(안 제28조의6) - (제안이유·방향⑤) 수·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하여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타 법령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제조’를 ‘제조’ 등으로 수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4호 및 제27조제2항 등)
「도로법」	• [의안번호: 제14117호(임종득 의원 등 11인)] (‘25.11.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도로굴착

법률명	주요 내용
규제 강화	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 내용을 내걸어야 하나, 공사가 시작될 경우 차량 이동이 제한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지만 인근 주민에게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안 제61조제6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4121호(강득구 의원 등 10인)] ('25.11.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내실있게 작동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개선 추진 - (제안방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개선 ▪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안 제36조제1항)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 규정(안 제36조제2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도록 규정(안 제36조제3항)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경우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 의무 부여(안 제36조제4항) ▪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안 제36조제6항)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75조제4항)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75조제5항)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75조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4132호(김형동 의원 등 10인)] ('25.11.1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지적 - (제안방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장애인등 편의법」	• [의안번호: 제14153호(남인순 의원 등 10인)] ('25.11.1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토록 규정 중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안 제10조의10 등)
「건설기계관리법」	• [의안번호: 제14156호(강대식 의원 등 10인)] ('25.11.1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정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제안방향)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 강화 유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택법」	• [의안번호: 제14214호(이연희 의원 등 15인)] ('25.11.1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 ▪ 특히 사업 초기 충분한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면서 부실한 조합이 설립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후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 ▪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외에 7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매매계약으로서 10% 이상 계약금 지급사실 증명)를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11조제2항 개정) ▪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3제1항 개정) ▪ 조합주택사업계획이 현재의 도시·군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모집신고 수리 이후에는 해당 주택조합건설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11조의3제5항 개정) ▪ 조합원 모집광고 시 추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5제1항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4222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1.1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홍수 등 악천후를 규정하고 있어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태풍·홍수만큼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으나 법 규정이 모호함에 따른 현장 혼란 가중 상황 - (제안방향)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을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70조)
「공공주택특별법」	• [의안번호: 제14283호(박용갑 의원 등 19인)] ('25.11.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 계획과 여건의 불일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매각한 토지가 2025년 6월 기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평에

법률명	주요 내용
	달하는 등 장기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가 적지 않은 상황 - 특히 이러한 미매각 토지의 상당수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할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 (제안방향) 정부가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안 제3장의2 및 제4장의2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의안번호: 제14288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1.14.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 중으로 - 현행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개선 추진 (제안방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 증진(안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호)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의안번호: 제14303호(김위상 의원 등 11인)] (‘25.11.17.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 (제안방향)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안 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의안번호: 제14332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1.17.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 중이나, -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 이기에 개선 필요 (제안방향)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 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36조 및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의안번호: 제14356호(박해철 의원 등 10인)] (‘25.11.18.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현행법 또한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제안방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3조, 제171조)

법률명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 [의안번호: 제14364호(이해식 의원 등 11인)] (‘25.11.1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한계 존재 -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 - (제안방향)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까지 확대하며, 위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101조 및 제106조) ※ 본 법률안은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6호)의 의결을 전제
「사법경찰 직무법」	• [의안번호: 제14366호(이해식 의원 등 11인)] (‘25.11.1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한계 존재 -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 - (제안방향)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마련 ※ 본 법률안은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4호)의 의결을 전제
「지방계약법」	• [의안번호: 제14398호(민형배 의원 등 10인)] (‘25.11.1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려우며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기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 - (제안방향)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국가계약법」	• [의안번호: 제14404호(민형배 의원 등 10인)] (‘25.11.1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려우며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기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 - (제안방향)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법률명	주요 내용
「주택법」	• [의안번호: 제14408호(신영대 의원 등 10인)] ('25.11.1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되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 인구 규모 등을 감안 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독자 추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아 임대주택 인수에 관해 시·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발생하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0조 개정)
「주택법」	• [의안번호: 제14422호(신영대 의원 등 10인)] ('25.11.2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어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 - (제안방향)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안 제20조)
「도시재정비 촉진법 특별법」	• [의안번호: 제14428호(손명수 의원 등 10인)] ('25.11.2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다소 지연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 활용과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공공주택 특별법」	• [의안번호: 제14432호(한정애 의원 등 12인)] ('25.11.2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 - (제안방향)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함과 더불어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 제고 유도(안 제24조 등)

법률명	주요 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4434호(정태호 의원 등 12인)] ('25.11.2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교육시설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 받거나,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 및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제안방향)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제12호 및 제20조의2 신설)
「주택법」	• [의안번호: 제14502호(임오경 의원 등 10인)] ('25.11.2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되어 생활 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 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 -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황 - (제안방향)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